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전보방안에 관한 연구

김 인 유†
(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Indemnity System of Fishery Damage by Natural Disasters

In-Yu KIM†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seen about a indemnity system of fishery damage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a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government aid system and system on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Recently, in the situation that the damage of aquaculture industry caused by frequent typhoon resulted from global warming and abnormal changed of weather is nasty, the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is necessary to show its true quality and to protect fishers against natural disasters owing to the limitation of government's aid for them.

However, The objects of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which is progress on, is too short to apply, so that it is absolutely insufficient to fulfill the demands of culturing fishermen.

Therefore, It could be a certain preparation to magnify the range of object items of it and to convert the trial industry being adjusted to limited area into full scale industry to adjust over all nationally. Furthermore, This insurance is complicated and strict to join rather than other insurances.

As it can be seen by examples that got in trouble, despite culturing fishermen applied to join the insurance, they took all damage because the insurance was not realized.

So, It is hard to say that causes impute the responsibility of it to the authority of insurance, not culturing fishery. They should simplify the registration process, limit the period each registration process and consider a countermeasure to complete it.

Concerning compensation for the loss, agriculture part is easier to investigate the loss due to remained dead crop damaged by natural disaster, meanwhile, in fishing part, especially in case of cultivation of fish, it is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loss and damage because crops are blown all together with typhoon when it comes plus the facilities of them are also very old.

Consequently to solve the problem needs more positive attitude as it is policy insurance.

key words : Natural disasters, Fishery damage, Indemnity system, government aid system, Insurance, Compensation for the loss

I. 서론

2012년 한해는 100년만의 가뭄, 40도에 육박하

는 폭염, 덴빈과 블라벤, 산바로 이어지는 태풍, 적조 등 기상이변의 속출로 양식어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언론보도 사례를 접하면 그

† Corresponding author : 051-410-4394, kiy4394@kmou.ac.kr

피해의 심각성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전남 진도에서 어류 종묘를 배양하는 조씨는 2012년 태풍으로 출하를 앞둔 치어 190만마리를 전부 잃었다. 시설피해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4억 8천만원에 이른다. 그는 2011년에도 태풍 무이파로 270만마리의 치어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가 2011년에 받은 보상은 재난지원금 5천만원과 용자지원 6,400만원이 전부였다. 여기에 1억원의 빚을 내 겨우 재기하였지만 희망은 1년만에 사라졌다”라는 것이다.

수산양식산업은 양식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규모 및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여름에는 적조와 고수온으로 가을에는 태풍으로 겨울에는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양식장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제정하여 피해 어업인에 대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원에 의한 어업피해구제는 시장친화적 정책기조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한도가 2006년 3억원에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억원으로, 2010년에는 5000만원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실제 피해비용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상이변이 잦아수록 자연재해도 늘어날 것이지만,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별적인 복구비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과 국가의 최소 복구지원 수준의 괴리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07년 12월에 「양식재해보험법」이 제정되었는데, 2008년 7월 1일에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0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복

(2010.5), 조피볼락(2011.5), 굴·김(2011.1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35개 품목에 이르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에 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불과 11개 품목(넙치(광어), 전복, 조피볼락(우럭), 김, 굴 5개품목과 2012년 추가한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에 지나지 않는 등 농업에 비해 여전히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농림수산물부 재해보상팀(다만 현재는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의 관할이다)에 따르면 2013년에 신규로 민물장어, 송어, 명계, 미역 등 4품목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상품목을 더 확대하고 있기는 하다. 즉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 4월에 강도다리, 7월 하순에 홍합을 도입하며, 10월 중에는 다시마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14.7.1). 이 중 민물장어의 선정은 그동안 천해양식(바다양식) 품목 위주로만 가능하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내수면 어종에까지 확대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대비책으로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하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어민들에 대한 손해전보와 관련하여 먼저 어업피해 의의 및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그 정보방안으로서 국가지원을 통한 어업피해 정보방안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한 어업피해 정보방안에 대해 비교·고찰한 다음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만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양식어류 등의 피해 외에도 어선이나 어선원의 물적·인적 피해도 있지만, 어선이나 어선원의 물적·인적피해는 수협공제제도(Cha, Cheol-Pyo · Park, Yong-Sub 1993)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되기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류 등의 피해정보에 대한 논의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II. 자연재해의 의의 및 어업피해의 현황

1. 자연재해의 의의 및 관련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재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및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동법 제3조 1호).

나.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동법상 자연재해라 함은 전술한 재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동법상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

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라.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농어업재해라 함은 농작물·임산물·양식수산물·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로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다.

마. 소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업분야의 자연재해로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등이 있으며, 어업재해로는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이상수온(異常水溫) 등이 있다. 이상조류에는 고수온, 냉수대, 빈산소수괴(貧酸素水塊)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란 해수중에 녹아있는 산소농도가 통상 3mg/L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주로 여름철 해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반폐쇄성 내만의 부영양화된 해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2. 어업재해의 특성

어업과 관련된 재해는 동시다발성, 불가항력성, 발생지역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르다는 점, 계절별로 재해의 종류가 다르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Kim, Hyeon-yong 2011.4). 물론 자연을 상대로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1차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해당되는 비슷한 특성이다.

가. 동시다발성

수산업과 같이 자연에 크게 의존하는 1차산업

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기상관측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미칠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 불가항력성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다. 기상관측기술의 발달, 각종 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자연재해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이상기상으로 인한 대규모의 재해에 대해 영세 어업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자력으로 이에 대응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다. 발생지역에 따라 피해정도의 차이성

발생지역에 따라 피해심도의 차이가 있다. 동일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과 피해가 경미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라. 계절별 재해종류의 차이성

여름에는 고온에 따른 적조, 가을에는 태풍, 겨울에는 한파, 폭설 등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종류도 다르다. 따라서 수산물에 미치는 피해도 자연재해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3. 어업피해의 현황

가. 태풍 피해현황

2012년 태풍 제14호 “덴빈”과 제15호 “볼라벤”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등 전라남도 15개 지역에 대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두 개의 태풍으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현황은 수산시설 4종의 피해액만 69,568백만원이고, 수산양식생물의 피해액을 합하면 그 금액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Table 1> Survey Result of the Typhoon Damage (unit : one million won)

Damage Types	Aquaculture facilities	fishing boat	fishing gear	Fishery
Damage content	3,505 places(17 Counties)	312 complete destruction(137), partial destruction(175)	92,499 tub(8Counties)	Flatfish, black rockfish, Sparidae, ear shell, etc.(9Counties)
Damage Amount	66,118	2,900	550	Flatfish(7,482), black rockfish(7,407), Sparidae(1,336),ear shell, (490,874)

Source: Jeollanamdo Disaster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No.14 · No.15 Report of the Result on the Typhoon Damage”, 2012.9.7.

나. 적조·폭염피해현황

(1)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적조피해 규모

<Table 2> Survey Result of the Red Tide Damage (unit : one million won)

Division	Period	Area	Damage Report Amount
2003	8-10Month	Ulsan, jeonnam, keongnam	21,501
2004	8-9Month	jeonnam, keongnam	120
2005	7-9Month	jeonnam, keongnam	1,061
2006	8-10Month	jeonnam, keongnam	73
2007	7-9Month	jeonnam, keongnam	11,498

Source :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Required data(2008, Ministry for Agriculture, Food, Forestry and Fisheries)

(2) 2012년 적조피해규모

2012년 8월 23일 현재 농림수산물식품부(현재는 해양수산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2년 여름 적조로 인해 돌돔 양식장에서 9억여원, 이상수온의 여파로 전복양식장에서 13억여원 등 총24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 지진해일 피해현황

지진·해일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한 것은 4차례 정도이다. 즉 1940.8월에 삼척, 울진, 울릉도 등에서 높이 2m 정도의 지진해일 발생하여 삼척 어선유실 2척, 침몰 4척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1964.6월에는 부산 32cm, 울산 32cm 해수면이 상승하였지만 피해는 거의 없었다. 1983.5월에는 울릉도 5m, 울진·동해시 2m 이상의 파고로 어선 154척이 피해를 입었다. 1993.7월에 일본에서 10m 이상 파고가 발생하여 한국에도 영향미쳤고 소형선박 19척 전파, 16척 반파, 어망 및 어구 3,228통 피해가 발생하였다(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1.3.29).

Ⅲ. 국가지원을 통한 어업피해 전보방안

1. 의의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지원”을 한다고 하고, 어업인들은 “보상”을 요구한다고 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재해지원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보상이라는 의미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가이다. 달리 말하면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지급받는 정당한 반대급부인 셈이다.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해를 입은 어민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하는 책임이 있고, 재해를 당한 어민은 정당하게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국가는 보상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고자 하는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재해에 대한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피해 어민들에게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적게 지원되므로 어업인들은 그 피해를 메우기 위해 재해보험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해보험은 강제보험이 아니므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한 어업인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어업재해 지원제도가 필요할 실정이다.

2. 재해지원 근거법령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비의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에서 “국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한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수산생물의 복구지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피해에 관한 국가지원의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들 수 있다.

3. 재해지원제도의 취지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자연재해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포괄적인 책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헌법」상 국가의 책무에 기인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복구비용을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각종 위험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가존립의 이유이다. 어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대책도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업재해는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업인 개개인이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4. 지원내용

가. 보조 및 지원내용(「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3항)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 ① 종묘대금 또는 치어대금(稚魚代金)
- ②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① 이재민의 구호
- ②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③ 영어자금(營漁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④ 정부 양곡의 지급 등
- ⑤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나. 이중수해 배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

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지만, 「자연재해대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고 규정하여 이중수해를 배제하고 있다.

5. 재해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수산양식의 경우 어업경영의 위험을 스스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강제보험이 아닌 점,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등에는 여전히 국가 지원제도가 어업피해 전보방안으로서 주요 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어업피해에 대하여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상기 열거한 사유 이외에도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피해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정여부는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업재해에 포함된 병충해와 유사한 재해인 어병, 갯병 등 각종 병해도 어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Kim, Hyeon-yong 2011.4). 이런 측면에서 농업분야와 비교하여 형평성 제고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 지원제도가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집행상의 배려도 필요하다.

IV.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한 어업피해 전보방안

1. 서설

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의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양식수산 어업인에게 손해를 보전해 줌으로써 어업인들의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식 재생산활동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Ryu, Jung-kon 2011.4). 이 보험은 지난 2007년 1월 1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2008년 7월부터 2년간 육상넙치양식을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2009년 3월 5일에는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을 통합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농작물과 수산물이 동법에 의해 통합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양식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특성

(1) 정책보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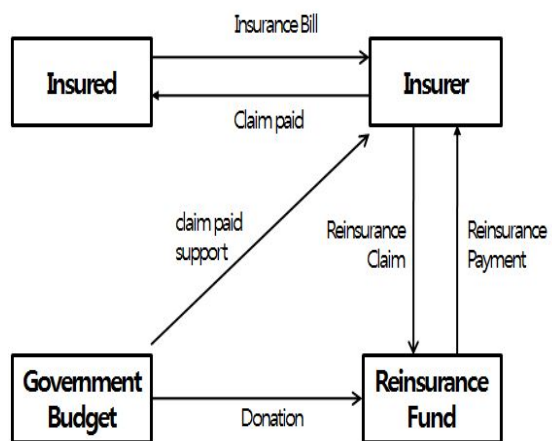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들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는 국가가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험료를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이유는 재해보험의 특성상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가 상승할 경우 어업인들이 보험가입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순보험료의 50%와 사업운영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자부담 보험료의 30-80% 내외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보장수준은 52.5-90% 수준이다.

(2)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도입하면서 국가재보험제도를 동시에 도입했다. 여기서 국가재보험이란 어업재해중 피해가 극심한 경우 재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하는 제도로써 손해율이 일정수준(양식수산물의 경우 140%)을 초과했을 경우 재보험기금으로 피해를 전보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재해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어 손해발생 가능성과 손해율이 매우 높아 보험사업자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거나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Ryu, Jung-kon 2011.4).



<Fig. 1> Procedures on the aquaculture Fisheries disaster Insurance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종류

가. 넙치양식보험

태풍(강풍), 해일,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넙치)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 2008-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보험가입 가능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본사업이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양식수산물인 넙치로서 부화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무게 100g이상의 것에 한하고, 양식시설물(육상수조식)은 양식시설 일체(단, 비닐 및 보온덮개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전복양식보험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전복)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가입 가능지역은 전남(진도, 해남, 완도, 강진, 신안, 여수, 고흥), 충남(태안)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2010-2011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10월 29일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양식수산물인 전복으로서 각장 3cm이상 또는 무게 5g이상인 것에 한하며, 양식시설물은 해상 가두리 양식시설 일체(닷, 닛줄, 셀타, 로프는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다. 해상가두리어류양식보험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기간은 1년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가입 가능지역은 전남(순천, 여수, 장흥, 강진, 신안, 여수, 고흥), 경남(사천, 통영, 하동, 남해, 고성), 충남(서산, 보령, 서천,

태안, 홍성)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다만 조피볼락과 참돔은 2014년 4월 22일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양식수산물 : (조피볼락, 참돔, 감성돔) 전장 13cm이상 또는 무게 40g이상, (기타볼락) 전장 8cm이상 또는 무게 20g이상, (돌돔) 전장 10cm이상 또는 무게 30g이상, (쥐치) 전장 10cm이상 또는 무게 50g이상, (농어) 전장 13cm이상 또는 무게 15g이상인 것에 한하며, 양식시설물 : 해상 가두리 양식시설 일체(닷, 닛줄, 로프는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라. 굴양식보험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굴)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기간은 6월 ~ 9월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가입가능지역은 보험가입 가능지역은 전남 여수, 경남 통영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4월 22일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 대상 품목이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양식수산물(굴)로서 연승수 하식 양식굴로서 수하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단, 월하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양식시설물은 연승수하식 굴양식시설 일체(단, 콜렉터 및 이동가능한 닛 및 부대시설은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마. 김양식보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김)과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가입기간은 매년 7월 ~ 10월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다. 보험가입 가능지역은 전남 해남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남아 있

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양식수산물(김)으로서 양성 단계에 있는 돌김, 일반김, 잇바디돌김으로 양성 시설 설치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하며, 양식 시설물은 지주식, 부류식 양식시설 일체(단, 김채 취선 등 부대시설은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담보범위와 보상 절차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범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본사업인 넙치·전복·조피볼락·굴 및 참돔 보험의 경우 그 대상인 이들에 대한 재해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하고 있고¹⁾, 위 수산물의 양식시설(부대시설포함)은 자연재해 및 화재를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참조).

한편 시범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재해범위는 자연재해 중 태풍, 강풍, 해일, 풍랑, 적조 및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질병이다(Oh Byeong-suk 2011.4). 그리고 시범사업 대상은 2014년 7월 현재 김,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송어, 멧게, 미역, 뽕장어,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 등 13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14.7.1).

4.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현황

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현황

2010년 말 기준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육상수조 넙치양식과 해상가두리 전복양식 2개의 상품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는데, 두 품목의 가입 적합 어가수는 모두 1874가구로 넙치가 629가구, 전복이 1245가구이다. 이중 넙치가입 어가수는 133가구로 21.1%의 가입률을 보인 반면, 전복은 48가구로 3.9%에 그쳐 전체 가입률은 9.7%에 불과하다.

2개품목의 보험가입 금액은 모두 817억40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보험가입금액은 4억5100만원이다. 품목별로는 넙치가 총 694억8000만원으로 5억2200만원이고, 전복은 122억6000만원에 가구당 평균은 2억5500만원이다(Ryu, Jung-kon 2011.4). 이처럼 전복의 보험금액이 낮은 이유는 넙치에 비해 생산 및 규모가 작은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2012년 8월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 사업장은 전체 5851곳 중 709곳, 7.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험대상 품목별로 보면, 넙치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39.3%, 전복이 13.9%, 돔·볼락 등 어류 7종이 8.9%, 굴이 4%, 김이 0% 등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전복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복양식의 주산지인 전남 완도지역의 자연재해발생률이 낮아 현지 어업인들의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과 해상 가두리양식의 특성상 높은 위험요인을 반영한 보험료 수준이 높아 어업인들이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 등으로 분석된다.

나. 보험료 납입현황

보험료 납입현황을 보면 총 보험료는 14억4700만원이고 국가보조를 제외한 자부담은 5억2900만원으로 가구당 평균보험료는 약800만원이지만 자

1) 예컨대 넙치의 경우, 보상하는 수산질병은 바이러스성 질병(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성 신경괴사증, 해산 버나바이러스 감염증, 랍도 바이러스 감염증, 이리도바이러스병), 세균성 질병(에드워드균 감염증, 연쇄구균 감염증), 기생충성 질병(스쿠티카 감염증, 백점증 감염증). 전복의 경우, 보상하는 수산질병은 패각괴사증, 근육위축증, 복부 팽만증, 요각류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이다. 이외에 조피볼락 등 보상하는 수산질병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47호 참조(www.mof.go.kr, 법령바다).

부담보험료는 약 300만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넙치의 총 보험료는 11억4400만 원에 자부담은 4억1800만원이고 가구당 평균 총 보험료는 860만원이지만, 자부담 보험료는 314만원 정도이다. 전복의 총 보험료는 넙치보다 낮은 3억300만원으로 자부담은 1억1100만원이고 가구당 총 보험료는 631만원에 자부담은 약 230만원 정도이다(Ryu, Jung-kon 2011.4).

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한 원인

양식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 둘째, 보험이 적용되는 재해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점, 셋째, 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낮은 인식과 양식어업인이 많은 전남지역에서 최근 몇 년간 자연재해 발생률이 낮아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5.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문제점

(1) 제한된 보험품목 및 재해보상범위의 협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식보험의 본사업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및 참돔 5가지 뿐이고, 감성돔, 기타볼락, 돌돔, 쥐치, 농어 등은 시범사업으로 행하고 있다. 현재 보험대상 품목은 다소 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며, 그나마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양식공제 대상품목이 패류, 어류, 김, 미역 등 40여종에 이르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본사업은 12% 정도, 시범사업을 합하여도 26% 정도에 불과하다(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07). 그리고 보상범위과 관련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태풍(강풍), 해일, 풍랑, 적조, 호우, 홍수, 대설, 동해, 낙뢰, 이상조류 정도를 보상하는 정도로서 보상범위도 협소하다.

(2) 복잡한 가입절차

현행 양식재해보험 가입절차는 보험가입 신청에서부터 현장조사, 현지확인, 보험증권 발급에 이르기까지 총 9단계를 거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 가입신청부터 보험증권 발급까지 총 4단계에 불과한 것과 달리 복잡하다. 이는 수산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수량 확인을 위한 가입서류 구비가 어렵고 현지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어업인들이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편 가축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1회 현장실사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양식재해보험의 현장실사는 2회로 규정되어 있다. 현장실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하는지 기간을 한정된 규정이 없어 어민의 경우 신청을 해도 실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3) 전문인력의 부족

2012년 12월 기준으로 수협중앙회의 양식재해보험 인력현황을 보면 현장실사를 담당하는 공제보험지부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인력이 전국 지부당 1명씩 총 7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중에 양식을 전담하는 인력은 4명 밖에 되지 않는다. 양식장의 대부분이 도서 벽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현장실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어업인들이 양식재해보험 가입신청을 해도 현장실사가 늦어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태풍 등 재해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남 완도군의 전복양식 어업인 4명은 2012년 7월 10일 해당 수협에 재해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이후 현장실사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가입이 계속 미뤄졌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보험가입은 8월 27일 태풍 블라벤이 전남 지역 양식장을 강타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처럼 보험가입의 현장실사가 늦어져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이다.

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개선 방안

(1) 보험품목의 지속적 확대

수협은 지난 2008년 7월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재해보험을 시작한 이후 2010년 해상가두리 전복, 2011년 해상가두리 조피볼락, 김, 수하식 굴 그리고 2012년 해상가두리 어류 중 감점돔, 참돔, 돌돔, 농어, 귀치, 기타볼락을 상품화함으로써 현재 총 11개 품목에 대한 양식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0년말 현재 수산물 생산통계에 기록된 천해양식산업 품종 수는 육상수조식 넙치를 포함해 40종이고 넙치를 제외한 어류가 모두 15종이다. 따라서 어류를 한 종으로 분류한다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화 대상 품종은 모두 25개라 할 수 있다. 25개 양식품종 중 생산액으로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품종을 보면 넙치, 어류, 전복, 김, 굴, 미역, 바지락, 다시마, 새우, 홍합이고 이들 품종의 생산량 비중은 40%에 불과하지만 생산량 비중은 무려 95%에 이른다(Ryu, Jung-kon 2011.4).

어업인들의 의견수렴 및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품목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가입대상 어업인의 범위확대 및 보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2014년 7월 현재는 본 사업 5개 품목, 시범사업 13개 품목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바지락, 새우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보상재해 범위 확대 및 시범사업의 본사업으로 전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안은 어업인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경우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재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품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자연재해 중 태풍, 강풍, 해일, 풍랑, 적조에 대해서만 보상재해의 범위로 한정하였으나, 현재는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이상조류도 보상재해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참조). 이러한 재해 이외에도 보험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연재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계약 외에 특약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경우 보험가입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3) 보험료 부담완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초점은 가입금액이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조기에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높은 재해위험을 수반하는 수산업의 특성상 보험료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보험료의 72.5%를 지원하고 있고(순보험료의 50% 및 사업운영비 100%),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고보조 이외에도 별도로 지방비 예산을 책정해 넙치, 전복양식 어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Lee Jun-seo 2011).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는 국고 보조 이외에 지방비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보험가입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우수보험가입자에게 대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 등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계약한 해에 무사고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고, 장기공제특약(4년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4) 전문인력의 양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국내 유사사례가 없고, 어종별·지역별 특성화로 규격화된 상품출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상품화 및 보상방안 마련 등을 위해서는 양식현실을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수산부분 양식관련 학과에 보험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5) 절차의 간소화

현행 보험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즉 조합에 양식수산물보험 신청→중앙회에 통보→중앙회에서 현지조사→현지조사내용을 조합에 통보→조합은 현지조사를 토대로 청약심사→청약심사완료→청약승인→계약성립→증권발급으로 종료된다. 대별하면 신청→현지조사→청약심사→청약승인의 절차이다. 물론 농작물의 경우 고정된 장소에 있는 것을 조사하면 되지만, 양식수산물의 경우 현지조사는 크기에 맞는 생물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단계의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6. 소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에서 어업인 스스로가 재해를 대비하는 제도로 전환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축소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부의존적 자세에서 벗어나 어업인 스스로 재난위험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자조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으로서 세계적인 추세이다. 자연재해의 특성상 높은 위험요인으로 보험료부담이 높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산환경을 감안해 볼 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성패요인은 어업인들의 부담요인을 축소하는 한편, 재해발생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게되면 품목에 따라 평균적으로 피해액의 8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

고, 나머지는 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그러나 어업인이 추정한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또한 손해사정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까지 피해입증을 위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매년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손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받는 대신 차라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받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어민도 많기 때문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저조하였다. 또한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점도 보험가입 기피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에 대한 양식재해보험제도가 정착된다면 정부 지원금에 의해 지원되는 약 10-15% 수준의 보상이 70-80%의 수준까지 상향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는 국가무상지원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양식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관리의식을 고취시켜 양식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식재해보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험가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순수한 민간보험이 아니라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가입하는 것만큼 어민들로서는 이익이다. 정책보험에 대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는 결국 어업인 자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 전보방안에 관하여 주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

하여 살펴보았다. 정부의 재난지원제도는 주무관청이 소방방재청이며 지원보상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형태는 무상인 반면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는 주무관청이 해양수산부이며 지원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이고 지원형태는 보험가입자에 한해 보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자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어업피해민에게 피해를 전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전보에는 한계가 있고, 후자는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어민에게 실손에 가까운 피해를 전보하는 측면은 있지만, 무상이 아닌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태풍 등으로 양식산업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은 한계가 있으므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또한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그 적용 대상이 너무 적어서 양식 어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지역에 국한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그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자연재해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최근에 문제가 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식어민이 보험가입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으로 하여금 태풍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한 것은 귀책사유가 어민에게 있다기 보다는 보험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력부족 탓으로 항변할 것이 아니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가입절차별로 기간을 한정(예컨대 가입신청 후 가입완료까지의 기일을 확정하는 방안 내지는 보험료 사전납부제도 도입방안)하여 조속히 가입절차가 마무

리 될 수 있는 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농업부분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산물이 죽은 상태가 남아 있으므로 피해조사가 손쉬운 반면에 어업부분, 특히 가두리양식의 경우 태풍이 오면 일순간 양식물이 사라져서 그 피해조사가 어렵고, 또한 시설도 노후 시설이 많아 피해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정책보험인만큼 인력보충을 통한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들의 대부분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날린다는 생각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당해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안심하고 양식을 계속하기 위한 필요경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Cha, Cheol-Pyo · Park, Yong-Sub(1993). "A Legal Study on Indemnification of Korean Mutual Insurance of Fisheries Cooperatives",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No.5-2.
- Jeollanamdo Disaster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2012). "No.14 · No.15. Report of the Result on the Typhoon Damage".
- Kim, Hyeon-yong(2011.4). "Government confined indemnity up to 50 million won, additional indemnity complemented by insurance", Hyundai Haeyang No.492.
- Lee Jun-seo(2011). "Insurance of flatfish starts in July, 2008. Expanded by ear shell, black rockfish, laver, and oyster." (monthly) Aquaculture No. 259.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2014.7.1.). "Summary of Aquaculture fisheries disasters insurance", news material.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1.3.29.). "I would like to know it - Earthquake · Tsunami".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2007). "Introduction of the aquaculture Fisheries disaster Insurance".
- Oh Byeong-suk(2011.4). "Disaster measures of

government is insufficient, overcome by insurance",
(monthly) Aquaculture No.259.
Ryu, Jung-kon(2011.4). "The indemnity range of
natural disaster should be extended, and insurance
of a variety of aquaculture should be developed."
(monthly) Aquaculture No.259.

-
- 논문접수일 : 2014년 07월 10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4년 08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8월 10일